
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강 동 길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최근 진주 방화사건, 교수 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의 빈발로 인해 시민들의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허술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
실효성 있는 퇴원 후 사례관리와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

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보건 현장의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.
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활성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강화와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안전정인 사례관리의 지원(안 제8조의2제1항 신설)과,

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(안 제8조의2제2항 신설) 하였습니다.

-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정립에 일조하여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을 사전에 막고, 시민의 불안 해소 및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